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필리핀

제24조제12항 중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5.4조”를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로, “중미 공화국들 · 이스라엘 · 캄보디아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중미 공화국들 · 이스라엘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공화국 또는 필리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필리핀

제24조의2제1항 중 “미합중국 · 인도공화국 · 페루공화국 · 콜롬비아공화국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이스라엘 및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미합중국 · 인도공화국 · 페루공화국 · 콜롬비아공화국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이스라엘 · 인도네시아공화국 및

필리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리핀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가 그 자체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필리핀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 ----- ----- ----- ----- ----- ----- -----.
1. ~ 21. (생략)	1. ~ 2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2. 필리핀</u>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⑫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	⑫ ----- ----- ----- ----- ----- ----- ----- ----- ----- -----

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중미공화국들·이스라엘·캄보디아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⑬ ~ ⑮ (생략)

<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4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4조----- 중미공화국들·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공화국 또는 필리핀-----

⑬ ~ ⑮ (현행과 같음)

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
야 한다.

1. ~ 14. (생략)

<신설>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인도
공화국·페루공화국·콜롬비아
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
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스라엘 및 인도네시아공화국(이
하 이 조에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대상국가”라 한다)으
로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세이프
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로부
터의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
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건
의할 때 해당 판정의 대상 국가
를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
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1. ~ 14. (현행과 같음)

15. 필리핀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① -----

----- 미합중국·인도공
화국·페루공화국·콜롬비아공
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스
라엘·인도네시아공화국 및 필
리핀-----

-----.

② -----

-----.

<단서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항에 따라 건의된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만, 필리핀으로부터의 특정물
품의 수입 증가가 그 자체로 국
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필리
핀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
에서 배제하도록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건의하여야 한
다.

③ -----

다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859